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31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3.

발 의 자:김예지・김소희・최형두

임종득・최수진・서천호

김선교 · 김장겸 · 박덕흠

김대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, 사회복지 종사인력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이 같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정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의 이탈을 방지할필요가 있음.

이에 사회복지 종사인력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, 종사자는 60세로 하고, 필요시 정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, 연장된 기간에 대 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안정적인 직무수행 환경 조성을 통한 충분한 복지 인력 확 보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제4항 및 제35조의2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설의 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. 다만, 이사회의 승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정년을연장할 수 있으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장된 기간에 대한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3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종사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. 다만, 시설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장된 기간에 대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5조(시설의 장) ① ~ ③ (생 | 제35조(시설의 장) ① ~ ③ (현 |
| 략) | 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④ 시설의 장의 정년은 65세로 |
| | 한다. 다만, 이사회의 승인 등 |
| |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|
| | 에 해당하는 경우 5년의 범위 |
| | 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|
| |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 |
| | 장된 기간에 대한 인건비의 일 |
| | 부를 지원할 수 있다. |
| 제35조의2(종사자) ① ~ ③ (생 | 제35조의2(종사자) ① ~ ③ (현 |
| 략) | 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④ 종사자의 정년은 60세로 한 |
| | 다. 다만, 시설의 운영위원회의 |
| |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|
| | 정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국가 |
| |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장된 |
| | 기간에 대한 인건비의 일부를 |
| | 지원할 수 있다. |